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51469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5146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단26419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환

피고, 항소인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은일, 박경호

변론 종결2021. 6. 18.

판결 선고2021. 7. 16.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단26419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26. 접수 제185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준서

판사강희석

판사오연정

별지